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회)	

한국국토정보공사법시행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제출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 목적을 명확히 하고, 공사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법」이 제정(법률 제20341호, 2024. 2. 20. 공포, 2025. 2. 21. 시행)됨에 따라 공사의 설립등기 사항, 사업의 구체적 내용, 출연·출자 및 채권의 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 (안 제2조)
- 나. 법 제6조제1호에서 위임된 공간정보체계 구축 지원에 관한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정함 (안 제3조)
- 다. 정부 외의 자 등이 출연할 경우 그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
- 라. 법 제11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공사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 마. 채권의 발행 형식 및 발행 방법 등 채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바. 법 제22조에서 위임한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함(안 제13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 전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등기 사항 등) ① 「한국국토정보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공사”이라 한다)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이사 및 감사의 성명과 주소
5. 자산에 관한 사항
6. 출자의 방법
7. 공고의 방법

②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사업) 법 제6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관련 계획수립에 관한 지원

2.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지원

제4조(정부 외의 자 등의 출연)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 외의 자가 공사에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출연하려는 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출자 등) 공사는 법 제11조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2.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와 가액(價額)
3. 출자 또는 출연 대상 사업의 개요
4. 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채권의 형식)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은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記名式)으로 할 수 있다.

제7조 (채권의 발행 방법 등) ① 채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발행한다.

1. 모집
2. 총액인수
3. 매출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총액인수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려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과 매출기간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제8조 (채권의 모집 등) ① 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채권 청약서 2부에 인수하려는 채권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기명날인(記名捺印)해야 한다. 이 경우 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1. 채권의 종류
2. 채권의 수(數)
3. 채권의 인수가액
4. 청약자의 주소

② 제1항에 따른 채권 청약서는 공사의 사장이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공사의 명칭
2. 채권의 발행 총액(해당 모집을 통해 발행하려는 채권의 총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채권의 종류별 액면금액
4. 채권의 이율
5. 원금 상환의 방법과 시기
6. 이자 지급의 방법과 시기

7. 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최저가액

8. 이미 발행한 채권 중 상환되지 않은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9. 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와 주소

10. 채권의 인수가액을 여러 번에 나누어 납부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분할 납부의 금액과 시기

③ 공사는 채권을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 청약서에 적힌 채권의 발행 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 청약서에 표시하고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응모 총액을 채권의 발행 총액으로 한다.

제9조 (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등) ① 공사는 채권 모집의 응모가 끝나면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채권가액의 전액이나 제1회의 금액(채권의 인수가액을 분할 납부하기로 정한 경우 첫 회의 납부금액을 말한다)을 납입하게 해야 한다.

② 채권 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자기명의로 공사를 위하여 제1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모집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 총액에 해당하는 납입금액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그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제10조 (채권의 기재 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사 사장이 기명날인해야 한다.

1.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2. 채권의 번호

3. 채권의 발행 연월일

제11조 (채권 원부)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채권 원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채권의 종류별 수와 번호

2. 채권의 발행 연월일

3. 제8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항 제9호의 사항

4. 채권 명의인의 성명과 주소(기명식 채권의 경우로 한정한다)

5. 채권의 취득 연월일(기명식 채권의 경우에 한정한다)

② 채권의 명의인 또는 소지인은 공사의 근무시간에는 언제든지 채권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① 공사는 채권을 발행하기 전에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게 통지하거나 최고(催告)할 때에는 채권 청약서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다만, 공사가 따로 응모자 또는 권리자의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② 공사는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해 통지하거나 최고(催告)할 때에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공사가 소지인의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그 주소로 통지하거나 최고(催告)할 수 있다.

③ 공사는 기명식 채권의 명의인에 대해 통지하거나 최고(催告)할 때에는 채권원부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다만, 공사가 따로

명의인의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종전의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
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제24조의2 중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
토정보공사”를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
공사”로 한다.

②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
정보공사”라 한다)

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

④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2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7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⑥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⑦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5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⑧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⑨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제2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⑪ 사망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

⑫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1항 중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의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로 한다

⑭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⑮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⑯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호 중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로 한다

⑰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중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

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이나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 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 국토정보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법 제22조 제1항	2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3460